

# 난파물제거 협약 (Wreck Removal Convention) 검토

2014. 11. 20.

**최 종 현**  
(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)

# 목 차

1. 협약 제정의 배경
2. 협약의 적용 범위
3. 협약에 따른 난파물 처리 절차
4. 난파물처리비용에 대한 선주의 책임과 예외
5. 강제보험제도
6. 해사안전법 규정과의 비교

# 1. 협약 제정의 배경

## ▶ 종전의 관련 국제협약

- 공해상 개입에 관한 협약 (1973년, 1996년, 2002년 개정의정서):  
중대하고 급박한 유류 또는 기타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의 위협이 있는 경우  
공해상에서 피해국가의 개입권 인정(1조 1항)
- 유엔 해양법협약 : 오염 또는 오염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공해상에서  
피해국가의 개입권 인정(221조 1항)

## ▶ 협약의 제정 목적 : 항해의 안전과 해양환경 오염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국제적 통일규범 제정

## ▶ 현재의 가입국 : 11개국 영국, 독일, 덴마크, 나이지리아, 인도, 이란, 팔라우, 불가리아, 모로코, 말레이시아, 콩고

## ▶ 발효예정일 : 2015. 4. 14.

## 2. 협약의 적용 범위

### ▶ 장소적 적용 범위(1조 1호, 3조)

-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 공해
- 영해는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

단 체약국이 선택할 수 있음(영국, 덴마크, 불가리아)

영해에 적용하는 경우 : 협약에서 정한 조치 이외의 조치에 대해서는  
협약상의 일부 규정(등록선주의 책임과 예외  
및 강제보험 규정) 비적용

## 2. 협약의 적용 범위(계속)

### ▶ 사항에 관한 적용 범위

- 선박 : 모든 종류의 항해선(크기 불문) (1조 2호)
  - \* 부양식 플랫폼 포함 단, 해저광물자원의 탐사, 개발 및 생산에 투입중인 부양식 플랫폼은 제외
  - \* 군함 기타 비영리 국유선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(4조 2항)
- 해양사고(Maritime casualty) : 선박 또는 화물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사고 또는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급박한 위협이 있는 사고 (1조 3호)

## 2. 협약의 적용 범위(계속)

### ▶ 사항에 관한 적용 범위

- 난파물(Wreck) : 해양사고로 인해 생긴 다음의 물건(1조 4호)

침몰 또는 좌초된 선박, 그 선박내에 있거나 있었던 물건,  
선박에서 유실되어 좌초, 침몰 또는 표류하는 물건,  
좌초 또는 침몰하고 있는 중이거나 좌초나 침몰이 합리적으로  
예상되는 선박

- \* 유류의 경우
- \* 표류선박의 경우

- 위험성(Hazard):
  - ① 항해에 위험이나 장애를 야기하는 상태 또는 그 위험
  - ② 해양환경에 중대하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거나 해안선 등에 손해를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상태나 그 위험 (1조 5호)
- 공해상개입에 관한 협약(및 그 의정서)에 따라 취해진 조치 : 협약의 적용 배제 (4조 1항)

### 3. 협약에 따른 난파물 처리 절차

#### ▶ 난파물 보고 (5조)

- 보고의무자 : 선장 및 운항자
- 보고 대상 : 피해체약국
- 보고 내용 : 난파물의 위치, 크기 등, 난파물이 입은 손상 등, 본선에 있는 화물 및 유류에 관한 사항, 등록선주의 연락처

#### ▶ 난파물 의 위치 경고 (7조)

- 경고의무자 : 피해체약국
- 경고 대상 : 항해사와 관련 인접국가
- 경고 내용 : 난파물의 위치와 성질

### 3. 협약에 따른 난파물 처리 절차 (계속)

#### ▶ 위험성에 관한 결정 (6조)

- 결정 주체 : 피해체약국
- 결정 기준 : 난파물의 크기, 수심, 항로,  
본선에 있는 화물과 유류 등 15개 항목

#### ▶ 난파물의 위치 표시 및 공표 (위험성이 인정된 경우) (7조)

- 표시의무자 : 피해체약국



### 3. 협약에 따른 난파물 처리 절차 (계속)

#### ▶ 난파물 제거 조치 절차 (위험성이 인정된 경우) (9조)

- 피해체약국 : 선적국 및 등록선주에 대한 통지 및 관련국과 협의
- 등록 선주: 제거의무 부담
- 피해체약국 : 난파물 제거완료일 지정
- 체약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경우
  - ① 제거완료일까지 제거되지 않거나 등록선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
  - ② 난파물로 인한 위험이 심각한 경우 선적국과 등록선주에게 통지한 후

## 4. 난파물처리비용에 대한 선주의 책임 및 그 예외 (10조, 11조)

▶ 책임의 주체 : 등록선주

▶ 무과실 책임

▶ 면책사유: 해양사고가 아래의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

- ① 전쟁 · 적대행위 · 내란 · 폭동 ·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
- ② 전적으로 손해를 끼칠 의도로 행해진 제3자의 행위
- ③ 전적으로 등대나 항로표지 유지책임이 있는 정부당국의 과실 기타 위법행위

\* 테러로 인한 경우

▶ 책임제한권 인정 : 각국법 또는 국제조약에 따른 책임제한 가능

▶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인정

▶ 제척기간 : 난파물의 위험성이 있다고 결정된 날로부터 3년,  
해양사고 발생일로부터 6년

## 4. 난파물처리비용에 대한 선주의 책임 및 그 예외 (10조, 11조) (계속)

### ▶ 선주 책임의 예외

- 타 국제조약상의 책임과 저촉되는 경우

1969년 민사책임협약 및 그 개정의정서

1996년 HNS 및 그 개정의정서

1960년 원자력에너지분야에서의 제3자에 대한 책임 협약 및 그 개정의정서  
또는 1963년 원자력손해에 관한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그 개정의정서

2001년 연료유협약 및 그 개정의정서

- 협약상의 조치가 해난구조에 해당하는 경우

## 5. 강제보험제도 (12조)

- ▶ **대상선박** :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
- ▶ **가입금액** : 각국법 또는 국제조약에 따른 책임제한금액,  
단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에 대한 1996년 개정의정서 상의  
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
- ▶ **가입주체** : 등록선주
- ▶ **보험가입증명서 제도** :
  - \* 비체약국 선박은 체약국 발행의 증명서 제출의무
- ▶ **직접청구권**:  
보험자가 원용할 수 있는 항변: 등록선주가가지고 있는 항변 (파산이나 청산 항변 제외)  
등록선주의 고의적 위법행위 (wilful misconduct)

## 6. 해사안전법과 협약의 비교

▶ **장소적 적용범위** :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

\*협약 : 원칙적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

▶ **항행장애물** : 선박에서 떨어지거나 침몰·좌초된 선박 또는 이로부터 유실된 물건으로서 항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

\*협약 : 난파물-해양사고로 인하여 생긴 물건, 위험성은 별도로 판단  
위험성 결정시 항해의 안전 뿐 아니라 해양환경에 대한  
중대한 영향여부도 평가

▶ **항행장애물 보고 의무자** : 선장, 선박소유자(또는 선박임차인) 또는 선박운항자

\*협약 : 선장 및 선박운항자

▶ **항행장애물 표시 의무자** : 선장,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

\*협약 : 피해체약국

## 6. 해사안전법과 협약의 비교 (계속)

- ▶ **항행장애물 제거의무자** : 선장,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  
(위험성인정 여부 불문)

\*협약 : 등록선주(단 위험성이 인정된 경우)

- ▶ **국가의 개입권** : 제거명령 불응 또는 위험성 인정된 경우

\*협약 : 위험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등록선주가 완료일내 제거하지 않거나 등록선주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난파물로 인한 위험이 심각한 경우

- ▶ **지급보증서 제출요구권** :

\*협약 : 보험가입증명서 요구는 체약국의 의무사항